

## 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2-3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,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1월 2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### 1. 근거법령

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
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

○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### 2. 행정처분 대상 : (주)그린월드홀○○

### 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# 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및 별표9 제1호 다.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-6735-8130/ FAX 02-6735-8144 / E-mail : hwangyj84@korea.kr

번호	대상자	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위반사항	과태료금액(원)	스팸전화번호	광고내용
1	(주)그린월드 ○○○	110111-4791***	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18,000,000	031-338-2***	회사상품